

이사회 규정

제정 2019-10-01

개정 2023-07-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권한)

-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제4조(구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의장)

이사회의 의장은 제7조 제1항의 이사회 소집권자로 한다.

제6조(이사회 개최)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매 3월에 1회 개최한다.
- ③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청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7조(소집권자)

-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소집한다. 단, 이 소집권자의 부재나 유고시에는 이사인 회장, 부회장, 사장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게 되며, 회장, 부회장, 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행임원 인사관리 규정상 Grade 구분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총재적 이사의 3분의1 이상이 공동으로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제1항에서 정한 소집권자에게 이사회 소집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이때 소집권자는 1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경우 그 청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되거나 또는 청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집통지가 없을 경우에는 청구자 공동명의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의2(대표이사의 직무대행)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인 회장, 부회장, 사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되, 회장, 부회장, 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행임원 인사관리 규정상 Grade 구분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직전일까지 목적, 일시, 장소를 서면, 구두, 전화, FAX, E-MAIL 및 기타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단, 이사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의결권, 의결방법)

- ① 이사는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 ②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 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결권 제한)

- ①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사정족수 산정의 수에는 포함되나 의결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부의사항)

- ①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1. 주주총회의 소집과 이에 부의할 안건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신주의 발행
 3. 준비금의 자본전입
 4. 주식의 소각
 5.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6. 사장 이상의 집행임원의 선임 및 해임. 이에 해당하지 않는 집행임원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에게 그 권한을 위임함
 7.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8.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폐지
 9.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10.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11. 신규사업의 결정에 관한 사항
 12. 이사회 규정의 개정

13.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규정의 제·개정
14. 국내외 지점 및 법인(당사가 최대주주이거나 1인 주주인 법인)의 설치, 이전 및 폐지.
단, (i) 지점을 제외한 국내외 사무소 등의 설치, 이전, 폐지, (ii) 해외 지점의 동일 국내에서의 이전, (iii) 프로젝트용 현지법인 또는 사무소의 설치, 이전, 폐지, 철수에 대해서는 부의대상에서 제외함
15. 사채의 모집에 관한 사항
16. 자산총액의 10% 이상의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17. 자본금의 10% 이상의 타법인 출자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
18. 관계회사 주식(자사주 포함) 매각에 관한 사항
19. 이사와 회사 간 거래
20.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또는 부여의 취소
21. 최대주주(그 특수관계인 포함)를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로써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거래
22. 회사가 기부하고자 하는 금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기타 회사의 기부금 출연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3.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기타 회사경영을 위한 중요한 사항으로써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 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3.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12조(이사회 내 위원회)

-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3조(위임)

이사회는 법령, 정관 및 본 이사회 규정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관계인의 의견청취)

-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관계 임직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이사회의 결의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5조(의사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16조(주관부서)

- ③ 이사회에 간사를 따로 둘 수 있다.
- ④ 간사는 회의의 소집통지, 의사록 작성 등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

부 칙(2019.10.01)

1. 이 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7.25)

1. 이 규정은 2023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